

장기요양이용계약

*2023년 01월 01일부터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 수가변동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동되어 적용됩니다.

제12조(재가급여 제공기준)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) ①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022년	1,672,700	1,486,800	1,350,800	1,244,900	1,068,500
2023년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300	1,121,100

제18조(방문요양 급여비용)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분류번호	분 류	2022년 → 2023년	
		수가	수가
가-1	30분 이상	15,430	16,190
가-2	60분 이상	22,380	23,480
가-3	90분 이상	30,170	31,650
가-4	120분 이상	38,390	40,280
가-5	150분 이상	44,770	46,970
가-6	180분 이상	50,400	52,880
가-7	210분 이상	56,170	58,930
가-8	240분 이상	61,950	65,000

제25조(방문목욕 급여비용) ①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24조의 급여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다.

분류번호	분 류	수가
나-1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내 목욕)	82,160
나-2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내 목욕)	74,070
나-3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6,250